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	
번호	

제안년월일 : 2016. 2. 1.

제안자 : 행정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조례안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가. “노인” 을 “어르신” 으로 함.(안 제13조의3제1항제10호)

나. 마포아트센터 대공연장 및 소공연장 1회 대관료를 25% 인상함.

(별표 마포아트센터 사용료(대관료, 강습료, 이용료) 종류 및 징수기준)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
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3조의3제1항제10호 중 “노인” 을 “어르신” 으로 한다.

안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13조의3(할인) ① 구청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50퍼센트 범위에서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, 각 호에 해당하는 할인율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1. ~ 9. (생 략)</p> <p>10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자 중 마포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<u>노인</u>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13조의3(할인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9. (원안과 같음)</p> <p>10. ----- -----</p> <p><u>어르신</u></p> <p>② (원안과 같음)</p>

[별표] <개정 2013.12.26>

마포아트센터 사용료(대관료, 강습료, 이용료) 종류 및 징수기준 (제12조제1항 관련)

1. 시설사용료

가. 일반기준

- (1) 개별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하고 대공연장 및 소공연장의 기본사용시간은 1회 3시간으로 하고, 종합체육관, 소체육관 및 그 밖의 시설 기본사용시간은 1회 1시간으로 한다.
- (2) 토·공휴일의 경우 총 시설사용료에 10퍼센트를 할증 적용한다.
- (3)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사용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.
- (4) 1회의 사용이 개별기준의 각 기본사용시간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시간 초과시마다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하고,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한다.
- (5) 주차장의 주차료는 개별기준에 따른다.
- (6) 개별기준 중 (1)부터 (6)까지의 시설사용료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한다.
- (7) 리허설, 준비, 철수 대관은 기본대관료의 50퍼센트를 적용하며, 오후 10시 이후의 철야 대관은 기본대관료의 100퍼센트를 적용한다. 단, 공연 종료 후 공연 대관 시간 내에 철수를 완료할 경우에는 추가 대관료를 받지 아니한다.
- (8) 평일 낮 공연은 기본대관료에 한하여 20퍼센트를 할인 적용한다.
단, 낮 공연은 오후 4시 이전에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(9) 사용승인을 받은 대관자는 센터장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고,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(은행영업일 기준) 센터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하며, 잔금은 사용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- (10) 기본대관료 할인 및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다.
 - (가) 장기대관(10일 이상의 대관)의 경우 기본대관료에 한하여 1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 적용할 수 있다.
 - (나) 1일 2회 이상의 공연에 대하여 1회 공연 추가 시 기본대관료는 20퍼센트 할인 적용한다.
 - (다) 마포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나 마포구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기본 대관료에 30퍼센트를 할인한다.
 - (라) 2개 항목 이상 할인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.
- (11) 부대시설 사용료와 개별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나. 개별기준

(1) 대공연장(아트홀 맥) 사용료

(단위 : 원/1회)

구 분	클래식,국악	연극,무용,재즈, 오페라	뮤지컬,대중공연	방송(촬영)	행사
기본대관료	625,000	1,000,000	1,250,000	1,500,000	1,750,000

(2) 소공연장(플레이 맥) 사용료

(단위 : 원/1회)

구 분	클래식,국악	연극,무용,재즈, 오페라	뮤지컬,대중공연	방송(촬영)	행사
기본대관료	250,000	312,500	375,000	500,000	625,000

(3) 삭제 <2013.12.26>

(4) 종합체육관 사용료

구분	기본사용료
대관료	50,000원/1시간

(5) 소체육관 사용료

구분	사용료
대관료	10,000원/1시간

(6) 그 밖의 시설 사용료

구분	사용료
다목적홀	30,000원/1시간
연습실	15,000원/1시간
전시실(갤러리 맥)	15,000원/1시간

(7) 주차료

구 분		주 차 료
일 반 차 량		- 기본 30분 1,000원 - 추가 10분당 500원
공연관람 차량		- 4시간 3,000원 - 추가 10분당 500원
공연장 대관차량 (대관 기간중)	대극장	- 차량 5대까지 무료 - 1일주차권 12시간 기준 5,000원 판매
	소극장	- 차량 3대까지 무료 - 1일주차권 12시간 기준 5,000원 판매
문화·체육프로그램 차량		- 회원(1일회원 포함) 프로그램 이용일 3시간 무료 (2개 이상 프로그램 회원 4시간 무료) - 추가 10분당 500원
그 밖의 차량		- 조례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차량은 “주차 확인”에 한하여 무료 - 업무용차량(수강신청 및 방문 등)은 “주차 확인”에 한하여 1시간 면제(추가 10분당 500원, 1시간 초과시 “주차 재확인”차량 면제) - 10분 이내 회차 차량은 면제

※ 비고

1. 시간제에 의한 주차요금의 상한액은 1일 15,000원으로 한다.
2. 10분 미만의 시간은 10분으로 간주한다.
3. 장애인, 국가유공자, 경차 등 할인(면제) 대상차량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에 정한 바에 따라 할인(면제)한다.
4. 2개 항목 이상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.
5. 주차요금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,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.
6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에 따라 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2. 문화 · 체육프로그램 사용료

가. 일반기준

- (1) 나목의 문화강좌 ·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용료와 관련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사한 사례를 기준으로 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- (2) 나목의 문화강좌 · 생활체육프로그램 중 생활체육프로그램과 체육시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한다.

나. 개별기준

(1) 문화강좌 · 생활체육 프로그램

(단위 : 원/월)

구 분		사용료
문화강좌프로그램		10,000 ~ 30,000
생활체육 프로그램	성인	30,000 ~ 200,000
	중·고생이하	25,000 ~ 200,000
유아 · 초등생 교육프로그램		25,000 ~ 150,000
유아체능단		60,000 ~ 340,000
기타		· 위 사용료는 월 단위 사용료로서 프로그램별 주 1회부터 주 5회까지 기준임 · 프로그램 내용 및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함

(2) 체육시설 사용료

(가) 수영

(단위 : 원/월)

구분	강습료	자유이용		그룹지도
		정기	1일입장	
사용료	25,000 ~ 80,000	25,000 ~ 70,000	1,500 ~ 4,500	100,000 ~ 200,000
기타	· 성인 월 강습회원은 해당 월에 월 2회 자유수영시간 무료이용(단, 일요일은 제외) · 공휴일의 1일 자유이용은 20퍼센트 할증			

(나) 헬스

(단위 : 원/월)

구분	일반	중·고생	그룹지도	개인지도
사용료	35,000 ~ 50,000	35,000	100,000 ~ 200,000	30,000 (1시간/회)
기타	· 휴관일은 이용하지 못하며, 공휴일은 별도 운영시간에 한함			

(다) 실내골프

(단위 : 원/월)

구분	정기	골프 아카데미	개인지도	1일이용		비고
				기본 1박스	추가 1박스당	
사용료	55,000 ~ 100,000	30,000 ~ 100,000	100,000 ~ 150,000 (1시간/1회)	4,000	2,000	휴관일은 이용하지 못하며, 공휴일은 별도 운영시간에 한함
기타	· 초등생/유아 강습은 주2~5회로 하며 1시간 강습, 1시간 자유이용 기준임 · 공휴일 1일이용은 20퍼센트 할증					

3. 독서실

구분	성인	중고생
월 사용료	30,000원	15,000원
1일사용료	1,000원	500원